

[해외여행분쟁] 해외여행 중 발생사고에 대한 여행사의 안전배려 의무 범위 + 자유시간

중 발생 사고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여부: 대법원 2017. 12. 13. 선고 2016다6293 판결



## 1. 사안의 개요

해외여행 중 자유시간인 야간에 숙소 호텔 인근 해변에서 물놀이하던 중, 여행사의 국외 여행 인솔자가 이를 발견하여 "바닷가는 위험하니 빨리 나오라."라고 말하고 그 현장을 떠났는데, 그 여행자가 다른 여행자와 함께 계속 물놀이하다가 익사하는 사고가 발생함. 그 유족들이 여행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안

## 2. 법원 판결 요지

항소심 법원은 여행사 책임 인정 + 손해배상청구액 중 일부 인정 but 대법원 여행사 책임 불인정 + 원심 파기 환송 판결

### 3. 대법원 판결이유

“기획여행업자는 통상 여행 일반은 물론 목적지의 자연적·사회적 조건에 관하여 전문적 지식을 가진 자로서 우월적 지위에서 행선지나 여행시설의 이용 등에 관한 계약 내용을 일방적으로 결정하는 반면, 여행자는 그 안전성을 신뢰하고 기획여행업자가 제시하는 조건에 따라 여행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러한 점을 감안할 때 기획여행업자가 여행자와 여행계약을 체결할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의 안전배려의무를 부담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기획여행업자는 여행자의 생명·신체·재산 등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여행목적지·여행일정·여행행정·여행서비스기관의 선택 등에 관하여 미리 충분히 조사·검토하여 전문업자로서의 합리적인 판단을 하여야 한다. 그에 따라 기획여행업자는 여행을 시작하기 전 또는 그 이후라도 여행자가 부딪칠지 모르는 위험을 예견할 수 있을 경우에는 여행자에게 그 뜻을 알려 여행자 스스로 그 위험을 수용할지를 선택할 기회를 주어야 하고,

그 여행계약 내용의 실시 도중에 그러한 위험 발생의 우려가 있을 때는 미리 그 위험을 제거할 수단을 마련하는 등의 합리적 조치를 하여야 한다(대법원 1998. 11. 24. 선고 98다 25061 판결, 대법원 2011. 5. 26. 선고 2011다1330 판결 등 참조).

여행 실시 도중 위와 같은 안전배려의무 위반을 이유로 기획여행업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문제가 된 사고와 기획여행업자의 여행계약상 채무이행 사이에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관련성이 있고, 그 사고 위험이 여행과 관련 없이 일상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것이 아니어야 하며, 기획여행업자가 그 사고 발생을 예견하였거나 예견할 수 있었음에도 그러한 사고 위험을 미리 제거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다하지 못하였다고 평가할 수 있어야 한다.

이 경우 기획여행업자가 취할 조치는 여행일정에서 상정할 수 있는 모든 추상적 위험을 예방할 수 있을 정도일 필요는 없고, 개별적 · 구체적 상황에서 여행자의 생명 · 신체 · 재산 등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통상적으로 필요한 조치이면 된다."

☞ 즉 위 사안에서 발생한 모든 사고에 대해 여행사에게 책임이 있는 것이 아니라 통상적으로 필요한 조치(자유시간 중 물놀이 + 바닷가는 위험하니까 빨리 나오라고 말한 점)

를 취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여행 주최자로서 안전배려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단정하  
기는 어렵다고 판단함.

조사자문, 형사/민사소송, 손해배상, 화해계약, 합의, 공탁 등 One-Stop 대응

---

T. 02-591-0657 E. [kkh@kasanlaw.com](mailto:kkh@kasanlaw.com) H. [www.kasanlaw.com](http://www.kasanlaw.com)